(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1- 5호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재공고 및 변경공고(변경공고)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인천 맞춤형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민간복지 활성화를 지원·육성하며 시민에게 고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구분	분야	직급	인원(명)	직 무 내 용
	합	계	5	
 전	피해장애인	전문직(센터장) *개방형직위	1	•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총괄
건 문	쉼터	전문직 (생활지도원)	3	· 피해장애인 관리 및 사례관리 교육진행
직	부평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전문직(센터장) *개 방형직위	1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총괄

- ※ 분야별 모집 예정이나 「세부 업무분장」은 상황에 따라 재단 원장이 지정
- ※ 분야별 모집 예정이나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채용기준

- 가. 개방형 직위 채용(전문직(센터장))
 - 자격사항
 - 성별·연령 제한 없음 (재단 인사규정 제36조(정년)에 따라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개방형직위 등으로 채용된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 거주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및 재단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아래의 직급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해장애인쉼터 ①「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 - ① 「영유아보육법」제16조(결격사유) ② 「영유아보육법」제20조(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영유아보육법」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1항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국가유공자법)

O 자격기준: 공고일 현재 모집분야별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자

분야	직급	자 격 기 준
피해 장애인 쉼터	전문직 (센터장)	 사회복지사1급 취득한 사람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 정하는 사람
부평구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전문직 (센터장)	

O 고용형태: 개방형 계약직

- 최초 2년 계약(성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 ※ 재단 인사규정 제6조(개방형직위)에 근거하여 개방형 직원의 임용기간은 최대 5년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음
- ※ 개방형 직원의 업무·연구실적 또는 직무수행능력 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O 특이사항

- 추후 재단 상황에 따라 인사발령(순환보직 등) 가능
- (전문직) <u>국공립시설은 위수탁 기관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u> 재위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 수탁기관 변경 시, 변경된 기관으로 고용승계 될 수 있음.

나. 전문직 채용

- O 자격요건(공통사항)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단, 재단 인사규정 제36조(정년)에 따라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거주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및 재단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래의 직급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해장애인쉼터
 - ①「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국가유공자법)

O 자격요건(세부사항)

구분	분야	직급	자격기준
전 문 직	피해 장 애인 쉼터	전문직 (생활 지도원)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O 특이사항

- 추후 재단 상황에 따라 인사발령(순환보직 등) 가능
- (전문직) <u>국공립시설은 위수탁 기관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u> 재위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 수탁기관 변경 시, 변경된 기관으로 고용승계 될 수 있음.

3. 결격사유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 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단 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가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 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개별사항

	피 해 장 애 인 쉼 터	센 터 장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생활지 도원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전 문 직	부평구육하종합지원센터	센터 장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건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권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중료(집행이 중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법적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법적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조제(학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학회원) 따른 아동학대관련법적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8조제(항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정과되지 아니한 자 1연(아동복지법) 제3조제(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지시길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보 작업을 해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소해를 입힌 경우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소해를 입힌 경우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소해를 입힌 경우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소해를 입힌 경우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소해를 입힌 경우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소해를 입힌 경우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소해를 입힌 경우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소해를 입힌 경우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소해를 입힌 경우다. 의정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3호 이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볍」제3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전형단계	내용 및 기준	비고	선발인원	
서류심사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 공란, 동일기호 반복, 문항별 100자 미만 작성 등 * <u>단, 3배수 초과 시 입사지원서 정량정성평가로 선발 가능</u> 	적부판단	요건 충족자	
면접시험	전문직(센터장)발표면접(50%) + 경험면접(50%)* 직무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면접 진행	직무별 상이	1배수 이내	
	전문직(생활지도원): 인성면접(50%) + 경험면접(50%)		भुषा	

가. 1차 시험: 서류심사

- O 적부판단: 응시자의 "응시원서" 와 분야별 직위에 따른 자격기준에 맞는지 적부를 채용대행업체에서 진행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함 * 공란, 동일기호 반복, 자기소개서의 경우 문항별 100자 미만 작성 등
- 정량/정성평가 심사위원은 채용분야의 업무 또는 인사(채용)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내부직원 및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선정
 - 구성(5명):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
 - * 3배수 초과 시 입사지원서 정량/정성평가 실시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시험방식]

(전문직(센터장)) 발표면접 및 경험면접 진행

* 직무수행계획서 중심 발표면접 진행

(전문직(생활지도원)) 인성면접 및 경험면접 진행

- O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 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채점
- 합격자결정은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의 합계가 60점 이상 득점자 중 우수한 사람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 자를 결정함

- O 심사위원은 채용분야의 업무 또는 인사(채용) 관련 업무와 관련 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내부직원 및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선정
 - 구성(5명):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1. 18.(월) ~ 2021. 1. 22.(금) 18:00까지
- O 접 수 처: 이메일 접수(inwf_insa@inwf.kr)
 -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인사담당자(032-721-6976)에게 수신여부 확인 요망

나. 채용일정

전 형 단 계	전 형 일 정	비고
서류심사	'21.1.25.(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1.1.27.(수)	재단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21.1.29.(금)	
면접시험(최종) 합격자 발표	'21.2.1.(월)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임용서류 접수 확인, 채용신체검사, 신원조회	'21.2월중	
신규임용 발령장 수여	'21.2월중	

- ※ 인천광역시 피해장애인센터 생활지도원은 2월 중 임용 예정
- ※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3월 중 임용 예정
- ※ 상기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분야별 모집예정이나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공통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 여야 할 것임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 이메일 접수 시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상의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 양식 에 따라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가. 서류접수 시

- 1) 응시원서 1부
 - 가) 전문직(센터장): 별지서식 제1호
 - 나) 전문직(생활지도원): 별지서식 제2호
- 2) 자기소개서 1부(공통): 별지서식 제3호
- 3) 직무수행계획서 1부(전문직(센터장)만 해당): 별지서식 제4호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공통): 별지서식 제5호
- ※ (공통) 해당 양식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뒤 작성,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나. 면접시험 시(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함)

- 1) (공통) 최종학교 <u>졸업증명서 1부</u>(공고일 이후)
- 2) (공통)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경력증명서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구) 1부
 -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 <u>공공기관 경력증명일 경우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u> 제출해야 함
- 3)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1부
 -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확인용이므로 근무 경력 사업장이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 4)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5) (해당자만) 자격증명서(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 1부
- 6) (해당자만) 취업지원대상자 증빙관련 서류 1부

7. 근무 및 보수수준

구분	분야	직급		근무 및 보수수준		
	피 해 자	전문직	고용형태	 ※ 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동안의 정규직 근무평가 실시 (근무 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취소 가능) 		
	피해장애인쉼터	선문적 (생활 지도원)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 교대근무제		
			급여조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인건비 기준에 따름		
			근무지	인천광역시(비공개 시설)		
전 문 직	부육종지 센터	전문직 (센터장)	고용형태	# 임용기간은 최대 5년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음 ** 변형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임용시기는 2021년 3월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임용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실시 (근무 성적 불량 또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취소 가능)		
	센터		근무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급여조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인건비 기준에 따름		
			근무지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18번길 51(삼산동))		

O 기타조건 : 재단 규정에 따름

8. 지원자 주의사항

○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모든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채용 담당자에게 감염사실 혹은 격리자임을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면접시험 당일 고사장 입구부터 시험실 입실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 기 바라며, 고사장 입구에서 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발열체크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 (해외이동여부, 국내확진자 발생 루트 이동사항, 코로나 관련 의심증상 확인)
 - 감염의심 응시자 시험진행: (응시자 희망시)면접전형시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 감염의심자 이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용구급차를 통해 인근 선별진료소 이송 전용구급차 지원 불가 시 119에 연락하여 전용구급차로 이송
 - ※ 코로나19관련 전용구급차 이외의 교통수단으로 선별진료소 이송 불가
- 시험중에도 마스크 착용은 가능하며, 감독관이 응시자 확인 시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하여야 합니다.
- O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관련 채용비리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입사 이후에도 징계해고 또는 직권면직처리 될 예정이므로 반 드시 이점 유의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제출 및 면접시험 등 채용절 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 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5일 이내 본인이 반환 신청 가능합니다.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라며, 특히 **학위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 의 원본을 제출하고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O 해당분야 및 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

- 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O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O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심사합니다.
- 면접시험은 전문지식 능력과 응용능력, 창의력, 개인의 잠재능력·품성 등을 중시하는 질문을 실시하여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합니다.
- 최초 채용에서 응시자 수가 모집인원의 1배수 이하이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전에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모집인원의 1배수 이하일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O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후위(次)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O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재단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032-721-69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전문직(센터장)용)

[블라인드 채용]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반드시 공고문의 관련 분야 및 직무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래의 항목별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분야는 반드시 공고상 분야를 명확히 기재, 서명날인 필수)

본인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 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발견 시 채용을 취소하여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지원자 : _____(인) 2021년 1월 일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

1. 인적사항

지원분야		직급	전문직(센터징	s) 접수번	호				
성 명	(한글)	(한글)							
od =1 +1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연 락 처	(비상연락처)			가점항목	□ 보훈대상				
기본자격(필수) 충족여부	선터장 이 시 (피해장애인 이 기 쉼터) 저	회복지시2급 따른 사회+ 정신건강증주 1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복지시설에서 5년 여 진 및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법 시행령」제12조의2	이상 근무한 복지서비스 <u>!</u> 제1항·별표 1	지원에 관한 법률」				
	/ 	L육전문요원의]력이 있는 A		기후 보육업무	·에 5년 이상 종사한				

2. 교육사항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기관명	소속부서	근무기간(00개월 00일)	직위	담당업무

	* 근무기간, '	담당업무 등여	기 제출할 경	^{병력증명서 L}	내용과 일치여	iiiiii 합니다.(반드시 경	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형	망 기재)
				ᅐ	무관련 주	요내용				
,										

5. 기타 참고사항

* 지원분야의 우대자격 사항 중 '외국어' 관련 자격기준이 있는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국어 능력수준 관련 성적표가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점수를 기재하시고 해당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분야 제외)

구분			능력	수준	비고
□ 영어	□ 일어		□ 초보	□ 보통	
□ 중국어	□ 기타()	□ 능숙	□ 아주능숙	

----- (절취선) -----

지원분야	직급		전문직(센터장)		응시번호	
성 명			- 연락처	(본인휴대폰)		
가점항목	□ 보훈대상(해당 시 체크)		한국 시	(비상	연락처)	

응 시 원 서(전문직(생활지도원)용)

[블라인드 채용]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반드시 공고문의 관련 분야 및 직무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래의 항목별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분야는 반드시 공고상 분야를 명확히 기재, 서명날인 필수)

본인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발견 시 채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1월 일 지원자: _____(인)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

1. 인적사항

지원분야	피해장애인쉼터	직급	전문직(생활지	도원) 접수반	호			
성 명	(한글)							
od ⊒L +I	(본인휴대폰)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연 락 처	(비상연락처)			가점항목	□ 보훈대상			
	피해 ㅇ 「사회보	-지사업법」 저	세11조에 따른 사회	회복지사				
기본자격(필수)	TLANOL & 「기차기기자기 미 기차기치기 보기차기 기차 비교 I							
충족여부	(생활 ○ 「국가기	(생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별표 1에 및						
	지도원) o 그 밖에	위와 동등 여	이상의 자격이 있다	구고 시 · 도지	사가 인정하는 사람			

2. 교육사항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력사항

가점항목

* 지원직무 관련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기관명	소속부서	근무기간(00개월 00일)	직위	담당업무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0	제 <u>출</u> 할 경력	증명서 내용	과 일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경력	증명서에 나타는	<u></u> 사항만 기재)
			직무	관련 주의	요내용			
5. 기타 참	고사항							
								기입하여 주
		l 등덕수준 제출하시기					··에 섬수들 /	기재하시고 ㅎ
8 8 8 7	구분	깨글의제기			면 수준 력 수준	<u>-1)</u>	н	고
□ 영어		 _ 일어		<u></u> 기 초보		보통 보통		-
□ 등이		」 ᆯ의 □ 기타() _	」		포공 아주능숙		
			_ /	 (절취선)				
	L =140.7		T			- 012	41 -	
지원분0		당애인쉼터	직급	선문식		음시!		
성 명	B S S S S S S S S S S			- 연 릭	([본인휴대폰	-)	

(비상연락처)

□ 보훈대상(해당 시 체크)

자 기 소 개 서

1.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세요.(띄어쓰기 포함 600자 이내)
2.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하세요.(띄어쓰기 포함 600자 이내)
3. 지원한 분야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사례, 문제해결 능력 발휘 등 본인의 경험과 성과를 기술해 주세오.(띄어쓰기 포함 600자 이내)
4. 재단 직원으로서 직업윤리 및 책임감이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띄어쓰기 포함 600자 이내)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A4용지 3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2021년 1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 귀하

직무수행 계획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시되, 서론(해당 센터의 정책, 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십시오.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본문 순으로 합니다.
- 분량은 A4용지 10매 이내로 하고 한글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반드시 2매 이내의 요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합니다.
 - * 세부 작성요령 : 공고문의 "작성요령 페이지" 참고
- ▷ 서류심사 : 이메일 서류 제출 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채용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학력(학위사항) 및 경력사항, 채용 가점(보훈관련 정보) 사항, 외국어 및 자격사항, 수상경력, 연구실적 (논문, 저서),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기타 채용을 위해 본인이 작성 및 제출한 관련정보 등 제반사항 ○ (임용예정자) 자격·경력사항,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입사시 수집), 현주소 등 채용관련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목적	○ 채용절차의 진행(본인확인 및 연락,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 및 관리, 경력·자격사항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여부의 결정, 우선채 용대상 자격 판단, 입사 확정 후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이행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채용절차 관련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본인의 동의일부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본인 요청시 파기) 동안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부정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로만 이용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1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재)인천광역시	(재)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면접시험채점표(전문직)

면접시험 채점표

응시내역 및	시 험 명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직렬 / 직급	
인적사항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평 정 요 소		평	평정		
등 성 표 고	배점	상	중	하	점수
1. 재단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o 목표의식, 지원동기 o 자기혁신, 장래의 포부 o 자질/희생 및 정의감, 봉사정신.활동 등	30	30~21	20~11	10 이하	
2. 전문지식 능력과 그 응용능력 o 해당분야 지식 및 기술의 숙지도 o 전문지식의 응용도 및 일반지식 o 업무수행능력 및 감각	30	30~21	20~11	10 이하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	10~8	7~5	4 이하	
4. 창의력.의지력과 발전가능성 o 팀워크 형성/목표공유 및 발전가능성 o 업무개선 능력(창의력) o 문제해결 능력(의지력)	20	20~16	15~11	10 이하	
5. 기타 예의.품행과 성실성 o 예의 품행과 성실성 o 가치관, 생활신조 등	10	10~8	7~5	4 이하	
가산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관한 법률)		
합 계	100	-	-	-	
면접위원 서명	위원 성	명 :		(서명)	

[면접시험위원 유의사항]

※ 합격결정: 평정 성적의 합계가 60점 득점한 중에서 고득점 순에 의거 합격자를 결정.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에 해당하는 점수 이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에 해 당하는 점수인 경우 불합격 처리)

※ 작성요령

Ⅱ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2호)

- O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inwf insa@inwf.kr)
 -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인사담당자(032-721-6976)에게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접수기간 : 2021. 1. 18.(월) ~ 2021. 1. 22.(금) 18:00까지
 - ① 글자크기 : 11P(글꼴 자유서식)
 - ② 지원분야 및 직급 : 지원코자하는 채용분야 기입(예시 : 피해장애인쉼터)
 - ③ 접수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④ 거 주 지 : 現거주지 주소 기재(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와 일치해야 함)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만 지원가능
 - ⑤ 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본인 휴대폰 번호 및 비상연락처 기재
 - ⑥ 기본자격 충족여부 : 해당분야 및 직급의 자격기준에 맞는 사항에 대해 충족여부 클릭(충족시 O, 미충족시 X 선택)
 - ⑦ 가점항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는 "대상"으로 선택 후 그 외 사항 기재
 - ⑧ 교육사항
 -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로 구분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
 - ⑨ 자격사항 : 정확한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예)2019.09.01.)를 기재
 - ⑩ 경력사항 : 관련 경력사항을 기재
 - ※ 기간은 예시)2000.01.01.~2001.12.31.(24개월 00일)로 기재
 - ① 직무관련 주요내용 :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경력사항 중 직무관련 주요내용을 기재
 - ② 기타 참고사항 : 외국어 능력수준 등 해당사항 있을 시 기재※ 해당사항 없으면 관련 항목 삭제
 - ③ 모든 내용 작성 후 응시원서 상단부 내용 확인 및 서명 또는 날인 후 이메일 최종지원

2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 ①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② 항목별 띄어쓰기 포함 600자 이내로 관련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 공란, 동일기호 반복, 문항별 100자 미만 작성 등

③ 직무수행 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전문직(센터장)만 해당)

- ① 별지서식 제4호 내 작성요령 참고하여 A4용지 10매 이내(표지, 목차 제외)로 하여 작성
 - ※ 예시 :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1Page)-목차(1Page)-요약서(최대 2Page)-본문 (최대 8Page)
 -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 ② 요약서 : 반드시 A4 2매 이내의 요약서를 작성
- ③ 양식: 자유양식 (한글 또는 워드프로세서 사용)
- ④ 글자크기: 11P(글꼴 자유서식)
- ⑤ 제출방법 : 이메일 서류 제출 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④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목적, 개인정보 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목 적에 대한 동의 ♣ 지원자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을 이메일 서류 제출 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5 기타 주의사항

-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때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오기재(미기재) 또는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불이익에 대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② 기본양식을 변경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지원서류 등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되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접수